

제 2826호

화순군공보

발행일 : 2019년 3월 21일
 발행인 : 화순군수
 발행처 :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
 화순군 기획감사실

차 례

고 시

화순군 고시 제2019-34호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 2

공 고

화순군 공고 제2019-336호 지방세 체납액 연대납세의무자 변경(승계)사항 알림 3

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·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회 랐

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5조 2항에 따라 우리군 소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3. 20.

화 순 군 수



○ 도로명주소 :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-20 외 7건

종전 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 사유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 고
(※부여 6건, 폐지 2건)		불		임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(☎ 061-379-3453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공 시 송 달 공 고

지방세 연대납세의무자의 대표자 사망으로 인하여 대표자 지정 등 변경사항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서류명칭 : 지방세 체납액 연대납세의무자 변경(승계)사항 알림
2. 공고기간 : 2019. 03. 21 ~ 2019. 04. 03.(14일간)
3. 공고대상 : 이정덕(50.1.9) 서울 은평구 응암로22길 8-14, 501호(응암동)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연대납세의무자

- 변경전: 박임순 외 5명(이정덕, 이경주, 이명덕, 이환주, 이양덕)
[대표자: 박임순]
- 변경후: 이경주 외 4명(이정덕, 이명덕, 이환주, 이양덕)
[대표자: 이경주]
- 변경사유: 대표자 사망

나. 관련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

다. 문 의 처: 화순군청 재무과(061-379-3063)

라. 체납내용: 취득세 1,886,040원(2019.3월 현재)

마. 기타사항: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알림 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
2019. 03. 20.

화 순 군 수

